

## 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175호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6일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4항)
-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)
- 다.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16조)
- 라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 신설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주소 : (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

과(전화 : 043-719-2255, 팩스 : 043-719-22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
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법률 제 호

##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할 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자는 품질인증식품의”를 “자는”으로, “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”를 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진의 제7항) 중 “절차·방법”을 “절차·방법, 기술적 지원”으로 한다.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품질인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「식품위생법」

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품질인증의 유효기간)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정보공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,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이용하여”를 “이용하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,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

<p>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<u>관할 시장·군수</u> 또는 <u>구청장</u>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5조(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<u>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, 심사,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<u>절차·방법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</p>	<p>-----</p> <p>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<u>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</u>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품질인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⑨ -----</p> <p>----- <u>절차·방법, 기술적 지원</u> -----</p>
--	---

<p>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6조(품질인증의 유효기간) <u>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6조(품질인증의 유효기간) ① <u>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8조의2(정보공개) 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</p>
--	--

<p>제24조(시·군·구의 식생활 안전 · 영양수준 평가 등)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<u>이용하</u> <u>여</u>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별로 식생활 안전 · 영양수준을 조사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의 범위, 제공 방법 및 절차 등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한다.</u></p> <p>제24조(시·군·구의 식생활 안전 · 영양수준 평가 등) ① ----- ----- <u>이용하</u> <u>여</u>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 는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
연락처	(043) 719 - 2255